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978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범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소20971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967,135원 및 그중 7,865,883원에 대하여 202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직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음성 녹음 등으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자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의2 제3항은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여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제428조의2)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도 없고, 위 대부업법 관련 규정은 오히려 보증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으로 작성한 서면에 의해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더 나아가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그 내용마저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 판사 이원중